

대학평의위원회규정

제 정 2012.12.

개 정 2016.02.

개 정 2018.10.

개 정 2020.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우송학원 정관(이하 “법인 정관”이라 한다.)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자격) ①평의위원회는 본 대학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3인
3. 학생 1인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인

②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평의원은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평의원은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4. 대학발전 평의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제3조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학생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임명기간으로 하되, 본직 기간이 종료되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임기 중 결위된 평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추천 및 위촉) ①대학에 평의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평의위원회 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대표 :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직원대표 :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
3. 학생대표 :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4. 대학발전 평의원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계 인사 중 평의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제5조 (의장.부의장) 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 (간사 등) ①평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 ①평의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 경우 총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8.)

②평의위원회는 재적평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①본 평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평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평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의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요청에 따라 법인 정관에 명시된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③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 (사무관장) 평의위원회의 사무는 전략기획처에서 관장한다.(개정2018.10.08.)(개정2020.09.10.)

제12조 (운영세칙) 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평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